

(2020-11) (주)○○○○ 이의신청 요약 ('20.10.13. 결정)

■ 사실 관계

- 2000.0.00. 신청인, ○○군과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2000.0.00.) 후 이 사건 토지 취득
- 2000.0.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음
- 2000.0.00.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군에 토지 처분신청
- 2000.0.00. / 0.00. 취득일부터 3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 2020.0.00. / 0. 0. 각각 감면받은 취득세 신고(현재 체납 상태)
 - ※ 처분청 : ○○군수 / 과세표준 0,000,000,000원 / 취득세 등 000,000,000원
- 2020.0.00. 토지 처분과정에서 양도(처분)가액이 낮게 책정되었고, 또한 취득세액 상당액을 양도(처분)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
- 2020.0.00. 처분청 경정 거부 통지 → 2020.0.00.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

■ 쟁점 사항

- 신청인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경영상의 악화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군이 취득물건에 대한 양도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여 시설용지 매매를 통하여 회사가 취한 이득이 없고, 양도가격 산정에 취득세액 상당액을 반영하여야 하나 양도가격 산정 당시 고려하지 않은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우리도 의견 : 기각

-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감면 당시에 산출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양도가액이 될 수는 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사유 또는 양도가액에 취득세액 상당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추징세액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경영상의 악화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